울 산 지 방 법 원

제 1 0 민 사 부

결 정

사 건 2014카합97 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

채 권 자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판희

채 무 자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, 담당변호사 설창환

주 문

- 1.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
- 2.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.

신 청 취 지

채무자가 2013. 12. 23. 채권자에게 한 B 위원장 해임결의의 효력은 해임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이 사건 기록 및 심문의 전 취지에 의하면,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.

가. 채무자는 양산시 소재 C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, 2012. 9. 4. 양산시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고, 채권자는 그 무렵부터 채무자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.

나. 채무자의 위원 중 D 외 31인은 채권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거나 추진위원회 개최를 방해하여 재건축 업무를 지연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2013. 11. 29. 채권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결의를 안건으로 하는 추진위원회 소집요청을 하였고, 이에 따라 소집된 2013. 12. 23.자 채무자 회의에서 재적위원 73명 가운데 의결권을 가진 위원 71명 중 46명의 찬성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해임결의(이하 '이 사건 해임결의'라 한다)를 하였다.

다. 이 사건 해임결의와 관련된 채무자의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다.

제15조 (위원의 선임 및 변경)

-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으며,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- 1. 위원장
 - 2. 부위원장
 - 3. 감사
 - 4. 추진위원 (토지 등 소유자의 1/10 이상)

제18조 (위원의 해임 등)

① <u>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 등 소유자</u>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의 해임·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 (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,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주민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임대상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위원정수에서 제외하며,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.

제24조 (추진위원회의 개최)

-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 <u>다만, 다음 각호의 1에</u>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추진위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 하는 때
 - 2. 재적추진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
- ②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 우 의장은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.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 한 자의 공동명의로 소집하며 이 경우 의장은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추진위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·안건·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추진위원에게 송부하고,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추진상 시급히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이를 통지하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2. 채권자의 주장

채권자는 이 사건 신청원인 주장으로, 이 사건 해임결의는, ① 해임권한이 없는 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졌고, ② 추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추진위원들에게 회의목적·안건 등이 기재된 통지서를 송부하거나, 이를 게시판에 게시한 바도 없으며, ③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마저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, 채권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, 무효이므로 그 효력의정지를 구한다고 주장한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

- 1)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추진위원장의 해임은 필요한 정족수를 갖춘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가능한 점, ② 재적위원 73명 중 1/3이상인 32명의 발의로 채권자에 대한 해임결의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소집되었고, 소집 7일 전부터 위원들에게 회의목적·안건·일시·장소 등이 기재된 통지서가 발송되었고, 위 내용 등이 게시판에 게시된 점, ③ 2013. 12. 23.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73명 가운데 의결권을 가진 위원 71명 중 46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해임결의가 있었고, 이는 운영규정에서 정한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,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임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.
- 2) 나아가 채권자에게 해임사유가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본 인정사실과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채권

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E 대표 F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, F 역시 같은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,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 감사인 G, H이 채권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채권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및 검찰수사를 받게 된 점, ② 운영 규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채권자는 재적추진위원 1/3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추진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요건을 갖추어 소집된 2013. 10. 30.자 제4차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, 채권자에게 운영규정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음이 일응 소명된 것으로 보이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

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.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구할 수 있는 것인데,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.

4. 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4. 3. 17.

재판장 판 사 장 홍 선

판 사 이 예 림

판 사 성기 석